

[참고]

사단법인 한국ESG학회의 정관 (회원 부분)

제5조(회원) ①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한다.

1. 정회원
2. 준회원
3. 단체회원
4. 특별회원

②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.

1. 대학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같은 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)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2.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
3. 국회의원, 판사, 검사,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4.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
5.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
6.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법인, 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임원

③ 준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다음의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된다.

1. 대학원이나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
2. 환경대학원생·경영대학원생·법학전문대학원생·행정대학원생·공학대학원생·의학전문대학원생 등 이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사람
3. 7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
4. 환경학·사회학·경영학·경제학·법학·행정학·생물학·생태학·지구과학·산림과학·해양학·공학·농업생명과학·의학 등과 관련된 분야의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

④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.

⑤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된다.

⑥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.